



오 민 근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 CRC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ufo1009@paran.com)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7

도시화비율이 적은 지방에서의 하천경관 보전과 활용(3)

하천경관은 지역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축

도시화 비율이 낮은 지방에서의 하천은 언뜻 생각하기에 보전이 잘되어 있을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 위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비중이 크지 않거나, 소규모 하천일 경우에는 그 관리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 즉, 사람이 많이 사 는 시가지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그 악취와 오염 등에 대해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논밭 등의 경작지를 흐르거 나 교외 지역을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소위 '보는 눈'이 거 의 없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그 환경의 질이 두 드러지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하천경관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더 나빠지게 되므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의 관리를 통해 지방의 쾌적함은 물론 경관향상의 기본축, 환경개선의 기본축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축으로 다룰 경우에 기본적인 관점은, 공학적 측면의 '환경'으로서, 학문분야의 하나인 '경관'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을 가꿔나가는 주민의 관점과 지역발전의 기반으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을 가꿔나가는 주민의 관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에서의 하천경관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하고, 어떻게 관리 되어야 하며,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가이다.

단순히,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정도로 지방의 하천을 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천에서 행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정서 적인 측면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의 기반으로서의 관점'이란, 하천이 해당 지역에서 갖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가치를 발 굴하고, 이를 지키고 활용하여 지역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관광과 같은 산업부문, 환 경보전의식 함양 및 체험활동학습을 통한 환경교육부문 등 의 것들을 들 수 있다.

하천경관계획 사례로 보는 하천경관의 관점들¹⁾

다음 (그림 1)은 경기도 산하 기초지자체의 기본경관계획 보고서에서 하천경관 관련한 부분만 정리해보았다.

'수변경관'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있

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관특성 분석

-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인해 자연하천들이 대부분 바다로 유입
- 하천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생태습지와 해수저수지가 연계되어 있음
- 매립지역에는 3개의 인공하천이 입지
- 매립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해안경관 급격한 변화 예상

경관요소 분석 중 '자연하천경관'에 관한 분석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경관요소 분석

- 대부분의 하천들이 주요 취락지와 시가지를 가로질러 서 해로유입
- 여러 하천이 연계되어 수(水)경관축 형성
- 자연형 하천이 농경지와 연계되어 수려한 전원경관 연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수변경관 정비전략'을 도출하여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여기서 사용하는 지자체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예시'로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계획 내용의 좋고 나쁨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림 1〉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p.18

수변경관 정비전략

- 생태자연 수(水)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 하천과 저수지를 활용한 다채로운 수변경관 조성
- 자연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해안경관 형성

이를 통해 '수변경관축 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경관을 구성하는 경관자원으로 '하천, 저수지, 해안 접경부'를 들어 그계 획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천'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보전 및 관리

• 하천 개방감 보호

형성

- 수변거점을 연결하는 blue-way 조성
- 시가지내 하천 친수공간 조성
- 수변데크 및 산책로 조성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blue-way 조성

- 저수지, 하천, 해안 등 지역의 주요 수변공간을 연결하는 blue-way 조성
- 지지체 그린웨이 중 수변공간과 연계된 일부 구간에 산책로 및 수변데크, 생태학습장, 수생식물 군락지 등을 조성하여 특징적인 수경관 연출

자연형 하천경관 보호

- 하천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인접지역 건축물 외관 및 형태 정비
- 하천변 부정적 경관을 연출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차폐
 식재
- 하천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대규모 구조물 설치 지양
 및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시설 중심으로 조성

시가지내 친수형 하천경관 조성

- 시기지 내를 관통하는 수변축을 활용하여 건조한 시기지
 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친수형 하천공간 조성
- 특정 시가지 일대에 복개되어 있는 하천의 일부구간을 복 원하고 친수형 공간 조성으로 생동감 넘치고 쾌적한 시가 지 경관 형성
- 하천 주변의 대규모 개발자는 일부 구간에 하천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이렇게 '하천경관'과 관련하여 정리해보았다. 대부분의 경

관계획에 나타난 '하천경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서 '하천경관을 보는 관점'이란 무 엇일까.

우선, 모든 내용들이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다는 점이다. 하천은 해당 지역은 물론 하천이 위치한 주변의 토지이용(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한다. 이는 곧 토지이용 행위를 행하는 주체가, 해당 하천에 대해 원하는 바가 있고 이를 파악하여 하천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두번째는, 하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관이 갖는 속성상 요소별로 사람이 인지하고 인식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천경관 또한 총체적으로 인지하고 인 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천경관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을 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하천에 존재하는 여러 구조물들과 이용행태, 주민요구사항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하천 경관 형성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이 시가지를 관통하는 경우는 보통 얘기하는 'waterfront' 정비가 행해질 수 있으며,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고 교외 경작지 등을 흐르는 경우에는 하천경관정비가 행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하천의 수질 등 환경적 차원에서의 개선과 정비에 관한 것이다.

하천경관의 법률상 범위가 갖는 하계

하천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하천경관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공간적 영역이 정해져야 함 은 누구나 아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상 하천경관의 범위는 물이 흐르는 양쪽의 '제내지'를 제외한 '제외지'와 '제방터'를 포함하는 '하천구역'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하천경관의 법적인 범위가 하천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답



은 '곤란하다'이다.

왜냐하면, 하천구역 바깥은 모두 '제내지'에 해당하며, 제 내지에서는 인간의 토지이용행위가 일어나 궁극적으로 하 천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적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수변경관지 구'를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및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방재시설의 하나로 하천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의 '수변경 관'은 하천의 물을 제외한 나머지인 '제내지+제방터+홍수터' 로 구성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천경관을 떠올리면, 물이 흐르는 하 천을 포함하여 눈에 들어오는 주거, 상업, 업무 등 제내지의 공간까지 포함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천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로는 하천 과 하천 주변에 존재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하천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하천을 수질을 높여 지역의 명소가 된 울산의 태화

강, 그리고 태화강변의 대나무숲은 '하천경관계획'에 의해 이 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태화강을 가면 하천이 깨끗하 고 악취가 나지 않는 것에 인상적으로 느끼며, 그 대나무숲 이 남아 있어 하천의 풍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감탄해 마 지않는다.

과연, 하천을 주변 토지이용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천 자체의 관리 목적과 함께 주변의 토지이용과 주 민들, 그리고 크게는 인접한 역사와 문화와 연계하여 경관관 리를 해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더 큰 의미 와 역할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천경관계획은 기존의 법률 에서 정하는 공간적 범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하천 이 자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천경관을 보전하고 활 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리대상범위를 정하여 하천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발주하는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한 것이다. 🅒